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정책국장 이성민[6574] 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 / 팀원 박수연[6587]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2513호

시행일자 2021. 5. 3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약제)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공고 2021-411호(2021.05.18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1955호(2021.05.18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52호(2021.05.31.)
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1950호(2021.05.31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이를 알려온 바, 해당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 개정사항

- 신설

- II. 약제 [229]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Vilanterol trifenatate + Fluticasone furoate + Umeclidinium 흡입제(품명: 트렐리지엘립타)

- 변경

- II. 약제 [218] 동맥경화용제 Omega-3-acid ethyl esters 90 + Rosu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로수메가연질캡슐)
- II. 약제 [339]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Lonoctocog alfa주사제(품명: 앱스틸라주 250 IU 등)

나. 시행일 : 2021. 6. 1.

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고시 1부.

2. 별지1 신설 급여기준 1부.

3. 별지2 변경 급여기준 1부. 끝.

